

외국대학 연수 취득학점 인정에 관한 시행세칙

제정일 : 2002년 03월 01일

개정일 : 2018년 06월 14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세칙은 학칙 제39조제7항 및 제63조제4항에 의거하여 재학기간중 외국대학에서의 자비연수와 취득 학점 인정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9.23.>

제2조(적용범위)

이 세칙은 정규 학기 및 계절학기 자비 유학과 어학연수의 경우에 적용한다. <개정 2007.3.6., 2014.12.23.>

제3조(연수대상)

연수대상은 외국대학의 정규과정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어학 연수는 학기단위(계절학기 포함)로 진행하는 대학부설어학원에 한하여 허용할 수 있다.

제4조(기간)

연수기간은 최대 1년(2학기)으로 한다.

제5조(연수 및 자비유학 신청)

① 정규학기 자비유학 신청자격은 성적 평점평균이 2.5(C+)이상인 재학생 또는 휴학생으로 하며, 파견 학기 동안에는 반드시 재학생이어야 한다. 다만, 졸업예정자는 신청에서 제외된다. <개정 2007.3.6., 2009.9.23., 개정 2013.5.20., 2017.2.14.>

② 자비유학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외국대학 유학생 지원서(별지 제1호 서식)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도교수 및 소속학과(부)장의 확인을 거쳐 소속대학 행정팀에 제출하고, 소속 대학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7.3.6., 2014.4.30., 2015.8.27.>

1. 외국대학 입학허가서
2. 학기별 성적조회표

3. 지도교수 추천서

- ③ 전항의 경우 연수대학, 정규과정등의 적합여부는 소속학과(부)에서 판정하여 지도교수 및 학과(부)장이 추천한다.
- ④ 어학연수 학점인정 신청은 국제처로 연수신청서를 제출하고 그 적합여부를 판정 받는다. <개정 2015.8.27.>
- ⑤ 계절학기 자비유학 신청자격은 성적 평점평균이 2.0 이상인 재학생 또는 휴학생으로 하며, 졸업 예정자는 신청에서 제외된다. 다만,레드라이언 인증제 대상 학생에 대해서는 따로 정한다. <신설 2014.12.23., 개정 2018.6.14.>
[제목개정 2013.5.20.]

제6조(수학허가)

- ① 자비유학은 소속대학장의 추천을 받아 총장이 허가한다. <개정 2007.3.6.>
- ② 어학 연수는 국제처장의 추천을 받아 총장이 허가한다. <개정 2013.5.20., 2015.8.27.>

제7조(등록 및 학기의 인정)

- ① 정규학기(계절학기 수학 및 어학연수는 제외)수학을 허가받은 학생은 유학기간을 본교의 등록 학기로 인정한다. <개정 2007.3.6.>
- ② 자비유학을 허가받은 학생은 해당 기간 동안 본교에 등록금을 납부하여 재학의 신분을 유지하여야 하며, 졸업해당 학기는 반드시 본교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편입생일 경우 본교에서 2학기 이상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7.3.6., 2014.12.23.>
- ③ 삭제 <2014.12.23.>

제8조(학점인정)

- ① 외국대학에서 이수한 교과목의 학점은 본교의 교과과정에 준하여 처리한다.
- ② 매학기당 학점인정은 최대 20학점까지이며, 1년간 최대 40학점까지만 인정한다.
- ③ 계절학기는 학기당 최대 6학점까지 인정한다. 다만, 레드라이언 인증제 대상 학생에 대해서는 따로 정한다. <개정 2007.3.6., 2018.6.14.>
- ④ 어학연수의 경우는 1회에 한하여 최대 3학점까지 인정한다.
- ⑤ 본교와 성적 및 학점인정 체계가 다른 국가의 경우 국제처에서 정한 국가별 등급 및 학점 환산표에 근거하여 소속학과(부) 및 제2전공, 부전공 학과에서 성적인정여부를 결정한다. <신설 2018.6.14.>

제9조(학점인정기준)

- ① 학생이 연수대학에서 취득한 성적(학점)은 본교에서 취득한 성적(학점)과 동일하게 인정하고, 주전공 및 제2전공, 부전공의 전공학점(전공핵심 또는 전공심화), 교양학점, 일반선택학점으로 구분하여 인정한다. 다만, 제2전공 및 부전공의 성적 인정은 신청 시 이수 중인 전공에 한하여 인정할 수 있으며, 학점인정 이후 변경 또는 추가 승인된 전공으로 재사정할 수 없다. <개정 2009.9.23., 2015.11.2., 2018.6.14.>
- ② 연수대학에서 취득한 성적(학점)은 평점평균(GPA) 환산시에는 포함되지 않으며, 전체 취득학점에만 포함한다. <신설 2018.6.14.>

- ③ 연수대학에서 이수한 과목 중 성적이 Pass와 Satisfactory는 성적(학점)으로 인정하며, Non-pass와 Unsatisfactory로 처리되었거나, 청강한 과목은 성적(학점) 인정시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6.14.>
- ④ 본교에서 이미 이수한 과목(유사과목 포함)의 학점취득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6.14.>

제10조(학점신청)

- ① 외국대학 이수학점을 인정받고자 하는 자는 연수 유학생 인정학점 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와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속학과(부) 및 제2전공, 부전공 학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소속학과(부) 및 제 2전공, 부전공 학과에서는 2인 이상의 전공교수가 이를 사정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12.11.23., 2015.8.27., 2018.6.14.>
1. 외국대학 성적증명서
 2. 학점인정 방식 및 수강교과목 개요서(번역문 포함)
- ② 어학연수 학점 신청은 연수 종료 후 즉시 전항의 신청서 및 전항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제처에 심사를 신청하여 교무처에 성적인정을 요청한다. <개정 2012.11.23., 2013.5.20., 2015.8.27.>

제11조(성적표 표시)

연수대학에서 취득한 성적(학점)은 해당대학과 협의하여 교양학점, 전공학점(전공핵심 또는 전공심화)과 일반선택 학점으로 구분하여 사정한 후 인정하며 성적표기 방법은 별표와 같이 한다. <개정 2009.2.21.>

제12조(보칙)

이 세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과 이 세칙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제처장이 내규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4.12.23., 2015.8.27.>

부칙

부칙(2002.3.1. 제정)

(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2002년 3 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5.1.25. 변경)

- ① (시행일) 이 변경세칙은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 (경과조치) 세칙 제11조는 2005학년도 신입학생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부칙(2007.3.6.
변경)

(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2009.2.21.
공포)

(시행일) 이 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9.9.23.
공포)

(시행일) 이 세칙은 2010학년도 신청자부터 적용하며, 이전신청자는 종전규정을 적용한다.

부칙(2012.11.23.
공포)

(시행일) 이 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3.5.20.
공포)

(시행일) 이 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4.4.30.
공포)

(시행일) 이 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4.12.23.
공포)

(시행일) 이 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한양대학교
학칙, 2015.8.27. 공포)

제1조 (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2조(다른 시행 세칙의 개정)와 관련해서는 2015년 8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한다.

제2조 (다른 시행 세칙의 개정) ①부터 ②까지 생략

③ 외국대학 연수 취득학점 인정에 관한 시행세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2항의 교학과를 행정팀으로 한다.

제5조 4항의 국제협력실을 국제처로 한다.

제6조 2항의 국제협력처장을 국제처장으로 한다.

제10조 1항의 교무처(교무입학처)를 교무처로 한다.

제10조 2항의 국제협력처를 국제처로 하며, 교무처(교무입학처)를 교무처로 한다.

제12조의 국제협력처장을 국제처장으로 한다.

④부터 ⑧까지 생략

부칙(2015.11.2.
공포)

(시행일) 이 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7.2.14.
공포)

제1조 (시행일) 이 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연수 및 자비유학 신청 자격에 대한 적용례) 본 세칙 제5조 연수 및 자비유학 신청 자격의 변경사항은 2017년 최초 신청학생부터 적용한다.

부칙(2018.6.14.
공포)

(시행일) 이 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별지

(별표)

첨부파일 참조

첨부파일 : 외국대학 연수 취득학점 인정에 관한 시행세칙 별표(제11조 관련).hwp

(별지
제1호 서식)

첨부파일 참조

첨부파일 : 외국대학 연수 취득학점 인정에 관한 시행세칙 별지 제1호(제5조 제2항 관련).hwp

(별지
제2호 서식)

첨부파일 참조

첨부파일 : 외국대학 연수 취득학점 인정에 관한 시행세칙 별지 제2호(제10조 제1항 관련).hwp